

제 1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1992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5. 28 - 6. 1 (5일간)				
의 결 일 시	1992. 6. 1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첨 부 : 1. 1992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1992년도 지방채(차입금) 발행계획 1부. 끝 * 의장은 기권으로 처리하였음 1 9 9 2 년 6 월 1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4	반 대		기 권 7 명

1992년도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 審査 報告書

1992년도 第1回 追加更正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 豫算決算 特別 委員會 委員長 金泰淵 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市長이 提出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23일 市長으로부터 議會에 제출되어 5월 28일 당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議事日程에 따라 5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9일 오전중에 각 상임 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방향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歲入分野의 추가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년도 폐쇄기가 지난이후에 稅入에 대한 조정변동이 없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既存豫算을 更正하여 增額된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削減하는것을 原則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경상비중에서 수용비나 행사비 등 消費的 經費는 상당한부분 삭감을 했다고 하겠습니까만 심사 숙고하여 위원들의 충분한 고려와 검토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전체적인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동의 (안)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명	추 경	심사결과 감액	확 정 예 산
계	13,386,599	6,142,188	7,244,411
일 반 회 계	5,781,578	1,548,588	4,232,990
특 별 회 계	6,261,595	4,593,600	1,667,995
상수도 특별회계	1,343,426		1,343,426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예산 심사결과 삭감 부분은 예비비에 계산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첨부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第1회 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I. 一般會計

1. 歲入 分野

○ 歲 入 - - - - - 4,419 百萬圓

(1) 稅外收入 - - - - - 3,654

(移越金 1,704 財産賣却 592 道稅交付金 1,264 其他 96)

· 이 월 금 - 순세계 잉여금 3,703,559천원중 '92 당초예산에 20억원이 계상되고 남은 금액

· 재산 매각 - 각급등 공유재산 매각 인편징액 대한 예산

· 도세교부금 - '91 도세징수 교부금 미수령분

(2) 補助金 - - - - - 415

· 국고보조	사회 복지 보조	105,481 천원
	산업경제비보조	△ 5,150 "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9,570 "

· 도비보조	사회 복지 보조	17,092 천원
	산업경제비보조	△ 3,072 "
	지역개발비보조	105,009 "
	전국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	190,000 "

(3) 地方債 - 진미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350,000 천원

○ 檢討 分析

歲入의 追加 財源 確保에 있어서 移越金の 整理는 年度閉鎖期가 지난 3月以後에, 財産매각은 '92 4月初에 議會의 承認을 得한 것으로 또한 道稅交付金도 會計年度 이후에 整理되어야 하는 것으로 追加財源의 모두가 當初豫算에는 計上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1회 追加更正豫算의 歲入分野는 稅入目標額의 變動없이 當初豫算의 成立이후에 發生한 財源이므로 적정하다고 하겠음.

1, 審議 回附 豫算 規模

(單位：千圓)

會計別		追更要求	減額	確定豫算額	備考
計		13,386,599	6,142,188	7,244,411	
一般會計		5,781,578	1,548,588	4,232,990	
特別會計		7,605,021	4,593,600	3,011,421	
	下水道事業	680,069	53,600	626,469	
	住宅事業	19,000		19,000	
	醫療保護基金	10,000		10,000	
	새마을所得金庫				
	새마을所得特別支援				
	零細民生活安定基金	50,000		50,000	
	工業用紙造成事業	32,363	20,000	12,363	
	土地區劃整理事業	5,247,563	4,520,000	727,563	
	公有林				
	治水事業	25,048		25,048	
	地方讓與金				
	上水道（公企業）	1,343,426		1,343,426	

2. 歲出 分野

○ 歲 出 - - - - - 4,419 百萬元

(1) 人 件 費 722

(2) 補助事業(生保者 居宅保濩外 2件) 200

(3) 補 闕 選 舉 32

(4) 全國民俗競演大會 544

- 大 會 運 營 451 (도비 190, 시비 261)

- 街路 環境 整備 86

- 基 他 7

(5) 一 般 經 常 費 1,585

(6) 經 常 投 資 費 480

(7) 既定 豫算 削減 △ 2,411

(8) 投 資 費 3,267

0 檢 討 分 析

(1) 人 件 費

인건비중 73 % 에 해당하는 530백만원은 法定經費인 급여와 수당으로서 計上되어 있으며 일용임부임 195백만원은 人夫賃 單價의 政府의 調整으로 當初에 일반인부임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특수인부임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引上된 것의 增額과 新設되는 業務와 기존의 업무중의 過重한 業務에 대한 補助등으로 새로운 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한 21명에 대한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다.

駐車場 管理 人夫賃이 12名으로서 가장 많고,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 관리와 수영보조지도자 인부임이 4명 그리고 의회사무보조 1, 세무과 2, 건설업무보조 1, 시민운동장 전광판 조작 및 사무보조원 1로 計上되어 있다.

이중에서 稅務事務補助는 계속되는 稅收增大에 따라 그만큼 業務量이 크진다고 볼진대 年次的으로 常用人夫로 現實化 하는것이 豫算 運營面에서나 채용 및 업무의 能率面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2) 全國民俗 競演大會費

全國民俗競演大會 運營費 策定이 451 百萬元이다.

그 中에는 道費가 190 百萬元, 市費가 261 百萬元으로 構成되어 있다.

全國的인 巨大한 行事임에 推進 費用을 具體的으로 計劃을 樹立하였다 해도 推進過程에서 누락되어 豫算에 計上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行事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미 計上된 部分은 충분한 여유로서 하나하나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빈약한 地方財政運營에 있어서 過重한 負擔이 되지않도록 國費 補助로 行事를 支援할 수 있는 方案을 檢討 中央政府에 建議해야 할 것이다.

(3) 經常費

經常費에 있어서 一般經常費 1,585 百萬元과 經常投資費 480 百萬元은 大別하여 人件費와 投資事業費를 除外한 모든 豫算이라 할수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法定經費 또는 必須經費로 구성되어 있다.

事業推進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는 文化行事費 2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270 百萬元 程度로서 追更豫算 全體에 비해 그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4) 投資事業費

投資事業費 3,267 百萬元으로 計上된 것은 既存 事業費에서 1,062 百萬元을 削減하여 再投資한 結果가 되어 實質的으로 2,205 百萬元을 投資하는 셈이 된다.

一般會計 追更豫算의 50 % 를 차지하는 것이다. 主要投資事業을 보면 恒상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20 백만원을 비롯 새로운 사업이 18개의 事業이고, 이미 豫算이 確保 되었으나 不足한 事業費를 充當하기 위한 事業費가 14個 事業에 2,366 百萬元이 計上되어 있다.

(5) 既定 豫算 削減額

既定豫算 削減額 2,411 百萬元중 예비비 1,349 百萬元을 除하면 事業費의 削減은 1,062 百萬元이 된다.

削減의 주요내역은 집행잔액 삭감과 道路開設事業에 있어서 土地補償만 完了된 事業의 잔액, 年度內 事業 着工이 어려운것 등이다.

Ⅱ. 特別會計

1.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會計別	更正	既定	増減	備考
特別會計	85,632	83,772	1,860	
下水道事業	6,049	5,732	317	
住宅事業	29,497	29,478	19	
醫療保護基金	384	374	10	
새마을所得金庫	36	36	0	
새마을所得特別支援	85	85	0	
零細民生活安定基金	508	452	56	
工業用地造成事業	7,890	7,830	60	
土地區劃整理事業	25,300	25,160	140	
公有林管理	5	5	0	
治水事業	466	361	105	
地方讓與金	6,300	6,300	0	
上水道(公企業)	9,112	7,959	1,153	

2. 會計別分析

○ 下水道特別會計

(1) 歲入 - - - - - 317 百萬元

- 임여금 301

- 잡수입(예금이자) 16

(2) 歲出 - - - - - 317 百萬元

- 인건비 54

- 공공요금 139

- 대수선비(하수처리장) 35

- 경상경비 97

- 예 비 비 △ 443
- 투 자 비 435

(3) 檢 討 分 析

가. 인 건 비

인건비 54 百萬원은 新設되는 금오산 오수중계 펌프장 2공단 옥계펌프장 및 비산 배수펌프장의 관리인과 전기기사 6명의 급료와 諸手當으로 計上되어 있음.

나. 공공요금

139 百萬원의 공공요금 역시 新設되는 펌프장의 전기요금 등이 計上되어있음.

다. 투 자 비

435 百萬원의 投資費의 主要事業 內容은 공단 간선배수로 복개공사 및 실시 설계용역 52 百萬원을 비롯하여, 下水道에 대한 民願을 對備하여 하수도준설 1억원, 뒷골목 하수도 정비 150 百萬원, 배수불량지구 150 百萬원등 既存 豫算 390 百萬원에 3억원을 追加로 計上하였고, 공단 간선 배수로 복개 250 百萬원이 計上되어 있음.

○ 住宅事業 特別會計

임여금 19 百萬원과 예비비 197 百萬원을 削減하여 시설비로 128 百萬원, 토지 매입비 85 百萬원 투입 나머지 경상비 충당으로 총 216 百萬원을 計上

○ 醫療保護 基金

이월금 10 百萬원으로 반환금 10 百萬원 計上

○ 零細民 生活安定 基金

이월금 6 百萬원, 융자금 회수수입 50 百萬원 合計 56 百萬원으로 영세민 전세 입주 보증금 50세대에 대해 가구당 6 百萬원에서 7 百萬원으로 百萬원씩 증액 융자하는데 충당

○ 工業用地 造成事業 特別會計

이월금 60 백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에 32 백만원과 예비비 28 백만원으로 충당

○ 區劃整理事業 特別會計

기정 예비비 108 억원중 51 억원을 削減하여 광평천 복개 1次 工事 物價引上과 支障物 移設에 10 억원, 광평천 복개 2次 工事分에 40억원 投入
신호등 2개소 35 백만원, 형곡동 사무소 증축분에 150 백만원 충당

○ 治水事業 特別會計

이월금 105 백만원으로 시설비 21 백만원, 기타 경상비 4 백만원, 나머지 80 백만원은 예비비로 충당

○ 上水道 特別會計

(1) 歲 入 - - - - - 1,153 百萬元

- 잉 여 금 783
- 과년도수입 10
- 수탁공사 수익 360

(2) 歲 出 - - - - - 1,153 百萬元

- 인 건 비 27
- 경상 경비 291
- 예 비 비 12
- 수탁공사비 360
- 投 資 費 463

가. 인 건 비

諸手當 支給基準 變更으로 인한 增額 人件費 27 百萬元

나. 경상경비

경상경비 291 백만원은 상수도기본계획 재정비 및 관망소 작성용역비 2억원과 노후급수관 교체비 57 백만원, 기타 34 백만원으로 計上되어 있음.

다. 투 자 비 463 百萬元

취수장 송수관 개체	108	"	
봉곡지구 배수관확장	248	"	
耐用年數 초과 전자식 유량계수선 ...	40	"	
취수장 역지변, 전동제수변 개체	25	"	
지산지구 배수관 부설	△ 25	"	(집행잔액)
출수 불량지구 배수관개체	53	"	
인동지구 배수관 부설	△ 69	"	(집행잔액)
취수장 건물 도색외 9건	53	"	

예 비 심 사 결 과 보 고 서

단 위 : 천 원

과 목			예 산 액	심 사 결 과
관	항	세 항		
의회운영	지방의회 운영	의회운영	120,986	·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중 재료비기타는 신청사 집기이전 인부임이며 특별판공비중 의정활동홍보비 2천만원은 조금 부족한 점이있다 하나 의회에서 증액을 못하기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청사 집기구입비로서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되나 장래성을 내다봤을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집행시 사무과장께서 타지역의회를 견학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992. 5. 2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 종 순

예 비 심 사 결 과 보 고 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심 사 결 과
관	항	세 항		
기획관리비	공보관리	정보비 판공비	공 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조정 검토 요망
		경상사업비	공 통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상사업비가 총체적으로 대폭 계상되는 사례는 당초 본예산 편성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요함.
		수용비및 수수료	34,950	주민홍보용 신문비용은 증액을 지양 하길 바라며 당초예산 삭감분을 다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니 재 검토 요망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일용인부 임	공 통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5~6배로 대폭 증대된 세무과 예산 회계부서 등의 일용인부는 현실화하여 300일 이상 으로 계상토록 검토요망
		시 설 비	700,000	의회 신청사 공사비가 추후 15억정도 계상되어야 하는데 8억이 미계상되었으므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니 미계상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요망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	8,850	아파트 한가죽운동의 성과를 분석하여 기존 부녀회의 활성화로 대체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요망
		、	공 통	각종 행사시 앰프임차가 많은바, 앞으로는 시에서 행사용 앰프를 구입, 사용함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증대 되지 않을지 재검토 요망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	문예행사	504,970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의 모든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요망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20,000	여러경기 연맹중 특별히 배구연맹에만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므로 각 연맹단체에 분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요망

예 비 심 사 결 과 보 고 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심 사 결 과
관	항	세 항		
가정복지	체육진흥 관리	체육시설 확충	20,000	국민학교 씨름단 지원과 연계하여 중· 고등학교 씨름단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요망
		올림픽기념국민 생활관 운영	공 통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시설을 보완하여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예산을 계상토록 바라며, 수영장 운영에 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요망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5,647	134p 보상금 청소년의 달 기념품증 세라믹볼펜 단가 500원 정도라면 구입 할 수 있음.
		주요 사업비	19,700	135p 자산취득비증 청소년 수련방 냉· 난방 설치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되겠으 며 135p 시설비 청소년 수련방 모노룸 설치부분의 단가책정도 문제가 있음.

1 9 9 2 . 5 . 2 8 .

총 무 위 원 회 위 원 장 이 대 일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장·관·항·세항에 의거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하나 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 부분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항의 인건비적 예산은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고 본위원회의 의견인바 예결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상 계산된 각종 집기 구입비와 재료비 기타 수용비 수수료등의 단가 책정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겠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인 131P 형곡 어린이집 신축공사 자재대(시멘트)인상분은 당초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인상요인 발생되었는지 불분명 하고, 133P 가정복지과 시설비 송정경노당 신축공사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은 예산 편성에 일괄성이 없는 집행기관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수 있으며, 184P 중소기업 육성기금 2천5백만원 증액 부분은 도방침변경에 따른 것임을 참고 하시고, 185P 불법주정차 단속 정보비 인상분은 인건비 보조적인 정보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P시설장비유지비의 전자복사기 유지비는 1년에 2회에 걸쳐 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197P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정보비 인상분은 5개월분 1,750천원이 과다 책정되었는다는 것을 담당국장님께서 시인 하셨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계산된 임부임 증액부분중 인건비인상요인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신규로 삽입된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별 무리없이 예산편성 되었다고 보았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 5. 28.

산 업 · 건 설 위 원 회 위 원 장 박 태 증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단위 : 천원)

장 관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합 계		50,989,000	46,570,000	4,419,000
1000	의 회 비	598,830	450,992	147,838
	1100 선 거 비	26,852		26,852
	1200 의 회 운 영 비	571,978	450,992	120,986
2000	일 반 행 정 비	14,448,518	13,109,169	1,339,349
	2100 기 획 행 정 비	1,536,516	1,362,015	174,501
	2200 내 무 행 정 비	8,552,596	8,130,206	422,390
	2300 재 무 행 정 비	4,354,406	3,616,948	742,458
3000	사 회 복 지 비	10,710,320	9,828,004	882,316
	3100 복 지 사 업 비	4,992,578	4,568,553	424,025
	3200 보 건 위 생 비	5,717,742	5,259,451	458,291
4000	산 업 경 제 비	2,160,138	1,822,002	338,136
	4100 농 수 산 비	878,005	842,818	35,187
	4200 임 업 비	442,950	441,635	1,315
	4300 지 역 경 제 비	839,183	537,549	301,634
5000	지 역 개 발 비	16,665,250	15,796,582	868,668
	5100 도 시 개 발 비	5,891,393	5,157,813	693,580
	5200 도로및 치수사업비	6,907,608	6,949,226	△ 41,618
	5300 지역개발 사업비	3,906,249	3,689,543	216,706
6100	문 화 및 체 육 비	3,863,173	3,239,054	624,119
	6100 문화예술 진흥비	2,346,336	2,002,399	343,937
	6200 체 육 비	1,412,419	1,132,557	279,862
	6300 교 육 비	104,418	104,098	320
7000	민 방 위 비	279,981	247,417	32,564
	7100 민 방 위 비	279,981	247,417	32,564
	7200 소 방 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단위 : 천원)

장 관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8000	지 원 및 기 타 경 비	2,262,790	2,076,780	186,010
	8100 지 방 채 상 환	276,258	289,901	△ 13,643
	8200 제 지 출 금			
	8300 징 수 교 부 금			
	8400 조 청 교 부 금			
	8500 예 비 비	1,986,532	1,786,879	199,65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회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선거비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선거 관리	31,852	5,000	26,852	정보비 1,000,000 - 1,000,000 = 0 특별판공비 1,000,000 - 1,000,000 = 0 ·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위원회 회의비 5,000,000 - 3,000,000 = 2,000,000 · 합계 : 31,852,000 - 5,000,000 = 26,852,000
의회운영	지방의회 운영	의회운영	120,986		120,98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 행정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획관리	82,528	34,000	48,528	*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2,500,000 - 1,000,000 = 1,500,000$ *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000 - 10,000,000 = 0$ * 정보비 $20,000,000 - 15,000,000 = 5,000,000$ * 특별판공비 $18,000,000 - 8,000,000 = 10,000,000$ ※ 합 계 $82,528,000 - 34,000,000 = 48,528,000$
		투자심사	19,050	19,050	0	* 전액감
		행정감사	4,653	2,000	2,653	* 정보비 $2,000,000 - 2,000,000 = 0$
		법무관리	41,396	39,500	1,896	*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15,500,000 - 15,500,000 = 0$ * 정보비 $12,000,000 - 12,000,000 = 0$ * 특별판공비 $12,000,000 - 12,000,000 = 0$ ※ 합계 $41,396,000 - 39,500,000 = 1,896,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예산관리	예산운영 관리	83,051	50,000	33,051	* 기본경상비 민간에대한 경상보조 50,000,000 - 50,000,000 = 0
		전산관리	7,230		7,230	
		통계관리	3,000		3,000	
	공보관리	공보관리	121,143	43,000	78,143	*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53,723,000 - 22,000,000 = 31,723,000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00,000 - 1,000,000 = 0 *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1,800,000 - 1,000,000 = 800,000 정보비 15,000,000 - 10,000,000 = 5,000,000 * 특별판공비 19,000,000 - 9,000,000 = 10,000,000 ※ 합 계 121,143,000 - 43,000,000 = 78,143,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내무행정비	총무인사관리	연금관리	48,184		48,184	
		서무관리	138,358	78,000	60,358	* 정보비 50,000,000 - 45,000,000 = 5,000,000 * 특별판공비 38,000,000 - 33,000,000 = 5,000,000 ※ 합 계 138,358,000 - 78,000,000 = 60,358,000
		의전관리	2,400	2,400	0	* 전액 삭감
		인사고시관리	50,180	8,400	41,780	* 특별판공비 8,400,000 - 8,400,000 = 0
		공무원교육및훈련	78,280	1,512	76,768	* 수용비및수수료 3,930,000 - 1,512,000 = 2,418,000
	문서통신관리	문서관리	4,000		4,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통신관리	4,750	1,350	3,400	· 수용비 및 수수료 1,510,000 - 1,350,000 = 160,000
		민원업무	7,776		7,776	
	시군행정 운영	일선행정 조직운영	85,214	16,800	68,414	· 정보비 6,000,000 - 6,000,000 = 0 · 특별판공비 3,000,000 - 3,000,000 = 0 · 보상금 16,000,000 - 7,800,000 = 8,200,000 ※ 합계 85,214,000 - 16,800,000 = 68,414,000
재무행정 비	수입관리	지방수입 관리	13,270	2,000	11,270	· 정보비 2,000,000 - 2,000,000 = 0
	회계관리	일반회계 관리	10,650		10,650	
		영선관리	5,175		5,17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물자관리	1,351		1,351	
	재산관리	재산관리	697,619		697,619	
	지적관리	지적관리	4,383		4,38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사회복지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증진	142,107	5,000	137,107	· 정보비 3,000,000 - 3,000,000 = 0
						· 특별판공비 2,900,000 - 2,000,000 = 900,000
						※ 합계 142,107,000 - 5,000,000 = 137,107,000
		노정관리	30,172	20,000	10,172	· 정보비 12,000,000 - 10,000,000 = 2,000,000
						· 특별판공비 15,000,000 - 10,000,000 = 5,000,000
						※ 합계 30,172,000 - 20,000,000 = 10,172,000
		근로청소 년회관 운영	91,516	39,575	51,941	·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7,101,000 - 20,000,000 = 7,101,000
						재료비 기타 4,420,000 - 2,000,000 = 2,420,000
						·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1,600,000 - 1,600,000 = 0
						수용비 및 수수료 2,860,000 - 2,000,000 = 860,000
						· 정보비 2,000,000 - 2,000,000 =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 특별판공비 2,000,000 - 2,000,000 = 0 * 임차료 4,500,000 - 4,500,000 = 0 * 보상금 5,475,000 - 5,475,000 = 0 ※ 합계 91,516,000 - 39,575,000 = 51,941,000
	생활보호	영세민보호	171,252	40,000	131,252	* 특별판공비 10,000,000 - 10,000,000 = 0 * 보상금 44,600,000 - 30,000,000 = 14,600,000 ※ 합계 171,252,000 - 40,000,000 = 131,252,000
		의료보험	6,139	1,780	4,359	* 기타수당 480,000 - 480,000 = 0 * 국내여비 1,000,000 - 1,000,000 = 0 * 보상금 300,000 - 300,000 = 0 ※ 합계 6,139,000 - 1,780,000 = 4,359,000
		부랑인보호	1,691		1,69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가정복지	아동복지	5,909		5,909	
		노인복지	46,506		46,506	
		청소년복지	30,047	8,600	21,447	* 경상사업비 보상금 5,647,000 - 1,000,000 = 4,647,000 자산취득비 15,860,000 - 5,000,000 = 10,860,000 시설비 3,840,000 - 2,600,000 = 1,240,000 ※ 합 계 30,047,000 - 8,600,000 = 21,447,000
		부녀복지 회관운영	29,955	14,500	15,455	* 시설장비유지비 4,502,000 - 2,000,000 = 2,502,000 *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8,600,000 - 8,600,000 = 0 보상금 1,200,000 - 600,000 = 600,000 * 경상사업비 대수선비 3,300,000 - 3,300,000 =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 합 계 29,955,000 - 14,500,000 = 15,455,000
		사회복지 관운영	△ 814	1,000	△ 1,814	· 특별판공비 3,200,000 - 1,000,000 = 2,200,000
보건위생 비	보건관리	보건기관 운영	127,738	54,000	73,738	· 기본경상비 수용비및수수료 2,000,000 - 2,000,000 = 0 · 경상사업비 수용비및수수료 5,100,000 - 2,000,000 = 3,100,000 재료비 기타 98,521,000 - 50,000,000 = 48,521,000 ※ 합 계 127,738,000 - 54,000,000 = 73,738,000
	위생관리	위생관리	12,550	1,200	11,350	· 보 상 금 5,500,000 - 1,200,000 = 4,300,000
	환경관리	환경관리	29,632	6,000	23,632	·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 2,300,000 - 1,000,000 = 1,300,000 특별판공비 2,000,000 - 2,000,000 =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 공기관용에 대한 위탁금 3,000,000 - 3,000,000 = 0 ※ 합 계 29,632,000 - 6,000,000 = 23,632,000
		청소관리	298,519	41,000	257,519	* 기본 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000,000 - 2,000,000 = 0 * 경상 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12,000,000 - 6,000,000 = 6,000,000 재료비 기타 18,340,000 - 9,000,000 = 9,340,000 임차료 600,000 - 600,000 = 0 보상금 3,400,000 - 3,400,000 = 0 시설비 138,500,000 - 20,000,000 = 118,500,000 ※ 합 계 298,519,000 - 41,000,000 = 257,519,000
		위생처리 장운영	92,052		92,05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산업 경제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농수산비	양정관리	양정관리	3,980	3,500	480	· 재료비기타 3,500,000 - 3,500,000 = 0
	농지관리	농업용수개발	0		0	
	축산진흥관리	축산행정	△ 12,478	1,000	△ 13,478	· 재료비기타 2,300,000 - 1,000,000 = 1,300,000
	농촌진흥	사무관리	7,139		7,139	
		농촌사회지도	4,288		4,288	
		농촌소득지원사업	66,758	30,000	36,758	· 재료비기타 65,858,000 - 30,000,000 = 35,858,000
임업비	영림관리	영림관리	1,612	2,000	△ 388	· 국내여비 1,000,000 - 1,000,000 = 0 · 정보비 1,000,000 - 1,000,000 = 0 ※ 합계 1,612,000 - 2,000,000 = 388,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조림사방 관리	조림사방 사업	△ 9,550		△ 9,550	
		녹지관리	139,813	128,560	11,253	* 국내여비 2,000,000 - 2,000,000 = 0 * 재료비기타 26,178,000 - 20,000,000 = 6,178,000 * 시설비 110,000,000 - 105,000,000 = 5,000,000 * 시설부대비 1,635,000 - 1,560,000 = 75,000 ※ 합 계 139,813,000 - 128,560,000 = 11,253,000
지역경제 비	지역경제 관리	지역경제 관리	24,589	24,589	0	* 전액 삭감
		상정관리	3,000	3,000	0	* 전액 삭감
	광공업관 리	중소기업 진흥	27,300	2,300	25,000	* 시설비 2,300,000 - 2,300,000 = 0
	교통기획 관리	교통기획 관리	13,505		13,5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운수행정 지도	189,569	5,700	183,869	* 경상사업비 수용비및수수료 9,031,000 - 5,000,000 = 4,031,000 임차료 900,000 - 700,000 = 200,000 ※ 합 계 189,569,000 - 5,700,000 = 183,869,000
		교통안전 시설관리	79,260		79,26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관리	214,141	20,000	194,141	· 용역비 50,000,000 - 20,000,000 = 30,000,000
	주택사업	주택기획	500	500	0	· 시설장비 유지비 500,000 - 500,000 = 0
		주택지도	484,281		484,281	
		건축지도	9,527	3,250	6,277	· 국내여비 1,500,000 - 1,500,000 = 0 · 정보비 4,200,000 - 1,750,000 = 2,450,000 ※ 합계 9,527,000 - 3,250,000 = 6,277,000
		주택사업소운영	12,881	4,000	8,881	· 정보비 2,000,000 - 2,000,000 = 0 · 특별판공비 2,000,000 - 2,000,000 = 0 ※ 합계 12,881,000 - 4,000,000 = 8,881,000
도로맞치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469,990	398,152	71,838	· 재료비 9,907,000 - 3,000,000 = 6,907,000 · 정보비 3,000,000 - 3,000,000 = 0 · 특별판공비 2,000,000 - 2,000,000 = 0 · 대수선비 3,000,000 - 3,000,000 = 0 · 시설비 414,000 - 384,000,000 = 30,000,000 · 시설부대비 3,312,000 - 3,152,000 = 160,000 ※ 합계 469,990,000 - 398,152,000 = 71,838,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도로교량 건설	△ 122,046		△ 122,046	
지역개발 사업비	새마을 사업	새마을 사업	74,956	81,650	△ 6,694	* 정보비 11,000,000 - 10,000,000 = 1,000,000 * 특별판공비 14,200,000 - 10,000,000 = 4,200,000 * 보상금 23,643,000 - 15,000,000 = 8,643,000 * 민간에대한 경상보조 83,560,000 - 40,000,000 = 43,560,000 * 대수선비 1,500,000 - 1,500,000 = 0 * 시설비 5,000,000 - 5,000,000 = 0 * 시설부대비 150,000 - 150,000 = 0 ※ 합 계 74,956,000 - 81,650,000 = △ 6,694,000
		자연보호 활동	7,175	5,300	1,875	* 수용비 및 수수료 4,750,000 - 3,000,000 = 1,750,000 * 임차료 300,000 - 300,000 = 0 * 시설비 2,000,000 - 2,000,000 = 0 ※ 합 계 7,175,000 - 5,300,000 = 1,875,000
	지역개발	일반지역 개발	104,000	4,000	100,000	* 재료비 기타 4,000,000 - 4,000,000 = 0
		공원관리	39,350	20,000	19,350	* 재료비 기타 19,492,000 - 10,000,000 = 9,492,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 시설비 19,700,000 - 10,000,000 = 9,700,000 ※ 합계 39,350,000 - 20,000,000 = 19,350,000
		공원관리 소운영	85,445	18,180	67,265	* 대수선비 5,000,000 - 3,000,000 = 2,000,000 * 시설비 31,500,000 - 15,000,000 = 16,500,000 * 시설부대비 378,000 - 180,000 = 198,000 ※ 합계 85,445,000 - 18,180,000 = 67,265,000
문화예술 진흥비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진흥	△ 7,710		△ 7,710	
		문예행사	504,970	89,000	415,970	* 급량비 6,975,000 - 3,000,000 = 3,975,000 * 국내여비 6,600,000 - 3,000,000 = 3,300,000 * 수용비 및 수수료 181,200,000 - 50,000,000 = 131,200,000 * 재료비 기타 15,920,000 - 8,000,000 = 7,920,000 * 임차료 43,000,000 - 10,000,000 = 33,000,000 * 민간에대한 위탁금 62,000,000 - 10,000,000 = 52,000,000 * 자산취득비 10,000,000 - 5,000,000 = 5,000,000 ※ 합계 504,970,000 - 89,000,000 = 415,970,000
		종합문화 회관운영	91,052	41,540	49,512	* 보상금 22,000,000 - 11,000,000 = 11,000,000 * 국내여비 3,750,000 - 3,750,000 =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 수용비 및 수수료 $4,720,000 - 4,720,000 = 0$ 재료비 기타 $7,500,000 - 3,000,000 = 4,500,000$ * 정보비 $2,000,000 - 2,000,000 = 0$ * 특별판공비 $3,000,000 - 3,000,000 = 0$ * 보상금 $11,200,000 - 5,000,000 = 6,200,000$ * 자산취득비 $4,070,000 - 4,070,000 = 0$ * 대수선비 $9,500,000 - 5,000,000 = 4,500,000$ ※ 합계 $91,052,000 - 41,540,000 = 49,512,000$
	문화재 관리	지정문화 재관리	185,800	4,000	181,800	* 수용비 및 수수료 $3,000,000 - 3,000,000 = 0$ * 보상금 $1,000,000 - 1,000,000 = 0$ ※ 합계 $185,800,000 - 4,000,000 = 181,800,000$
		기타문화 재관리	△ 250,635	45,000	△ 295,635	* 용역비 $45,000,000 - 45,000,000 = 0$
체육비	체육진흥 관리	체육진흥	149,400		149,400	
		체육시설 확충	25,000		25,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체육비	체육진흥 관리	올림픽기 념국민생 활관운영	112,572	54,700	57,872	· 방송시설, 통신시설 운영비 $5,500,000 - 4,700,000 = 800,000$
						· 수용비 및 수수료 $4,968,000 - 3,000,000 = 1,968,000$
						· 재료비 기타 $6,613,000 - 3,000,000 = 3,613,000$
						· 자산취득비 $13,540,000 - 5,000,000 = 8,540,000$
						· 시설비 $39,000,000 - 39,000,000 = 0$
						※ 합 계 $112,572,000 - 54,700,000 = 57,872,000$
		시민운동 장운영	57,590	10,000	47,590	· 대수선비 $16,000,000 - 5,000,000 = 11,000,000$
						· 시설비 $15,000,000 - 5,000,000 = 10,000,000$
						※ 합 계 $57,590,000 - 10,000,000 = 47,590,000$
교육비	사회 교육비	건전생활 지도	320		3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민방위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운영관리	500		500	
		민방위시설장비	420		420	
		민방위교육훈련	24,041	8,000	16,041	* 수용비및수수료 6,462,000 - 3,000,000 = 3,462,000 * 보상금 9,697,000 - 5,000,000 = 4,697,000 ※ 합계 24,041,000 - 8,000,000 = 16,041,000
	비상대책	비상대책업무	△ 600		△ 600	
		예비군관리	6,000		6,000	
	지역안정	지역안정	9,750	5,000	4,750	* 물품구입비 9,750,000 - 5,000,000 = 4,750,000
		방법활동	5,453		5,45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 행정비 (동소관)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내무행정비	시군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111,710		111,710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영선관리	12,010		12,0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지역 개발비 (동소관)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도로 및 치수사업	도로사업	도로교량 관리	8,590		8,590	
지역개발 사업비	지역개발	일반지역 개발	34,910		34,9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지원 및 기타경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지방채 상환	지방채 상환	지방채 상환	△ 13,643		△ 13,643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1,348,935	증액 1,548,588	199,65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심 사 내 역
관	항	세 항	당 초	삭 감	확 정	
관리비	관리비	하수도사업운영	224,067		224,067	
사업비	사업비	하수도사업	536,002	53,600	482,402	* 국내여비 3,600,000 - 3,600,000 = 0 * 재료비기타 51,416,000 - 30,000,000 = 21,416,000 * 대수선비 35,000,000 - 20,000,000 = 15,000,000 ※ 합 계 536,002,000 - 53,600,000 = 482,402,000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 80,000		△ 8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363,069	증액 53,600	△ 309,46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사업비	사업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50,000		5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6,000		6,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공공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사업비	사업비	공공용지 조성사업	32,363	20,000	12,363	* 정보비 $10,000,000 - 10,000,000 = 0$ * 특별판공비 $12,000,000 - 10,000,000 = 2,000,000$ ※ 합계 $32,363,000 - 20,000,000 = 12,363,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7,637	증액 20,000	47,637	* 예비비 $27,637,000 + 20,000,000 = 47,637,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관리비	관리비	토지구획 정리사업 운영	2,270		2,270	
사업비	사업비	토지구획 정리사업	5,245,293	4,520,000	725,293	* 정보비 10,000,000 - 10,000,000 = 0 * 특별판공비 10,000,000 - 10,000,000 = 0 * 시설비 5,179,000,000 - 4,500,000,000 = 679,000,000 ※ 합계 5,245,293,000 - 4,520,000,000 = 725,293,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5,107,563	증액 4,520,000	△ 587,563	* 예비비 △ 5,107,563,000 + 4,520,000,000 = △ 587,563,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사업비	도로행정사업	시외국도정비사업	△ 1,722		△ 1,722	
	수질오염방지사업	하수도관정비사업	0		0	
	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육성사업	0		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722		1,7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관리비	관리비	치수사업 운영	411		411	
사업비	사업비	치수사업	24,637		24,637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79,952		79,95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심사내역
관	항	세항	당초	삭감	확정	
						* 원안대로 심사함.

자 금 운 영 계 획

수입자금 및 지출자금

(단위 : 천 원)

구 분		당 년 도 예정액 (A')	전년도예산상 계정액 (B')	증 △ 감
수 입 자 금 (A)		9,314,181	7,959,000	1,355,181
영 업 수 입		7,373,295	7,013,295	360,000
	급 수 수 입	6,204,224	6,204,224	
	수탁 공사 수입	1,074,250	714,250	360,000
	기타 영업 수입	94,821	94,821	
영 업 외 수 입		49,292	49,292	
	수입이자및배당금	21,002	21,002	
	타회계부담금수입	27,900	27,900	
	기타 영업외 수입	390	390	
전 년 도 미 수 금		40,000	30,000	10,000
	수용가미수금수입	40,000	30,000	10,000
	기타 미수금 수입			
자 산 매 각 수 입		3	3	
	토 지	1	1	
	입 목			
	건 물			
	기 계 장 치	1	1	
	기타가동설비자산	1	1	
고 정 부 채 수 입				
	외 국 차 관			
	공 채			
	재 정 자 금			
	기타 고정 부채			
영 여 금 수 입		596,409	596,409	
	시설분담금수입	279,500	279,500	
	타회계건설보조금	316,909	316,909	
전년도이월금수입		1,255,181	270,000	985,181
	현 금 이 월 액	1,053,000	270,000	783,000
	사 고 이 월 액	202,181		202,181
	미지급금이월액			
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수입	1	1	

자 금 운 영 계 획

수입자금 및 지출자금

(단 위 : 천 원)

구 분		당 년 도 예 정 액 (A ')	전 년 도 예 산 상 계 정 액 (B ')	증 △ 감
지 출 자 금 (B)		9,222,869	7,879,443	1,343,426
영 업 비 용		7,602,030	6,923,531	678,499
	원정수및 취수비	5,613,905	5,583,166	30,739
	배수및 급 수 비	210,022	143,313	66,709
	업 무 비	703,853	482,802	221,051
	관 리 비			
	수 탁 공 사 비	1,074,250	714,250	360,000
영 업 외 비 용		177,250	177,250	
	취급이자및취급제비	176,750	176,750	
	기타영업외비용	500	500	
전년도 미 지급금				
	미 지 급 금 미 지 급 비 용			
가 동 설 비 자 산		1,443,589	778,662	664,927
	토 지 임 건 구 축 기 계 차 량 공 기 구 비 기타가동설비자산	16,000 1,122,153 260,490 2,700 42,246	619,672 147,890 2,700 8,400	502,481 112,600 33,846
비가동 설비 자산	건 설 가 계 정			
이 연 자 산	이 연 계 정			
무 형 고 정 자 산	무형고정자산계정			
고 정 부 채 상환금				
	외 국 차 관 공 재 정 자 기타 고정 부채			
기 타 자 본 지 출				
차 액 (-)		91,312	79,557	11,755

계 속 비 조 서

(단위: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총 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991			1992			1993			1994			1995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금오산성 복원추가공사 (일 반 회 계)	석축 L=50M 자연석 석차 2개소 돌포장 A=225㎡ 흙쌓임 1개소 성곽보수 L=70M	480,000	50,000	50,000		430,000	295,000	135,000									

사 고 이 월 사 업 비 조 서

원 반 회 계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자출원인 행 위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 ㉠)	차 년 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개 무 행정비	개산관리	개산관리	주 요 사업비	시설비	시험사 실험 신축 (의뢰4무선)	810.000	809.335	584.345	225.010	225.010	• 5.3 건설경기 정점대책으로 극반기 발주하여 공기 부족으로 본사업 이월에 따름.
"	"	"	"	"	" 강리비	9.720	9.720	0	9.720	9.720	
"	"	"	경 상 사업비	자산취득비	환경전소망 다중사업기거구입	4.000	3.666	2.800	866	866	• 조달청 구매로 대금 미청구
복 지 사업비	가정복지	아동복지	주 요 사업비	시설비	탁아소 건립	512.880	497.411	50.811	446.600	446.600	• 특정 기부사업으로 그회 추경시 확정되어 공기 부족.
"	"	"	"	시설부대비	탁아소 건립 부대비	21.541	19.387	15.502	3.885	2.885	• 본사업 이월에 따름.
"	"	노년복지	"	시설비	도량 동 노인회관 신축	61.547	60.354	5.254	55.100	55.100	• 3회 추경시 예산 확보로 증결 공사 중지로 공기 부족.
"	"	"	"	시설부대비	"	4.259	4.259	1.877	2.382	2.382	• 본 사업 이월에 따름.
보건위생	환경관리	환경관리	"	시설비	쓰레기음발 처리장 조성공사	800.000	797.670	601.670	196.000	196.000	• 제2회 추경시 추가예산확보로 재계약에 따른 공기 증가.
"	"	환경관리	"	시설부대비	구미천 정화사업 기본및 실시 설계 용역	109.969	95.000	28.500	66.500	66.500	• 2회 추경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되어 공기 부족.
도시 개발비	도시관리	도시관리	"	용역비	천평및 송정제2공원조성 사업실시 설계 용역	60.000	47.500	0	47.500	47.500	• 공원내 상경합 미결정으로 용역기간 연장
"	"	"	"	시설비	제3금요교 ~ 역후문간 도로 측고 공사	2.592.000	2.587.077	2.392.655	194.422	194.422	•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른 지장물 미철거로 수용 신장.

사 고 이 월 사 업 비 조 서

원 반 회 계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지출잔액 ㉠-㉡	차 년 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도 시	상하수도	하수도	주요	시설비	부곡동(생태)하수도 설치	15.000	15.000	0	15.000	15.000	◦ 3회 추경시 소규모 주변 주민 사업으로 예산확보되어 금기 부족.
"	"	"	"	"	신평1동(철성주력) 5동 하수도 설치	13.000	11.660	0	11.660	11.660	◦ " "
"	"	"	"	"	비산중앙로 보수공사	13.000	11.374	0	11.374	11.374	◦ " "
"	"	"	"	"	진 평 하수도 설치	23.000	22.990	0	22.990	22.990	◦ " "
도 로	도로사업	도 로	"	"	국도 33호선 확장	2,470.000	2,449.902	2,301.691	168.211	168.211	◦ 광평 고속 BOK 공사와 중복되어 차액이 시정으로 금기 부족.
"	"	"	"	"	노량산입도로 개설	700.000	700.000	89.528	610.472	610.472	◦ 용지 보상 지연
"	"	"	"	시설부대비	"	36.960	34.808	29.808	5.000	5.000	◦ 본 사업에 따른 이월
지 역	지 역	원 반	"	시설비	선가동 이주단지 진입로 포장	23.000	22.389	1.519	20.870	20.870	◦ 제3회 추경시 소규모 주변 주민 사업으로 예산확보되어 증결지 공사 시정중으로 금기 부족.
"	"	"	"	"	구동2동 하수도 용관 매설	14.000	11.417	0	11.417	11.417	◦ " "
채 국비	문화재	기 라	"	"	민족관 당장별 마루 설치공사	200.000	179.433	114.733	84.700	84.700	◦ 2회 추경시 부대공사비 추가 확보하여 시정중으로 금기 부족 (추가 시정보충금 이월)
	합			계		8,493.876	8,410.372	6,220.693	2,189.679	2,189.679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사 고 이 월 사업비조서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자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지출잔액 (㉠ - ㉡)	차 변 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사업비	사업비	하수도 사업	정수 사업비	응역비	하수 처리장 확장응역	1,360,000	1,170,000	234,000	936,000	936,000	○ 2회 추경시 예비보 사업으로 확립되어 공기 부족.
"	"	"	주요 사업비	시설비	제1공단 정수지역 배수 관공 설치	2,000,000	1,608,211	700,035	908,176	908,176	○ 1회 설계 응역으로 인하여 하변이 발주되어 공기 부족.
"	"	"	"	"	제2공단 폐수및 축계인동 주거지 자하수 작업 4설	2,581,000	2428,138	1,603,994	824,164	824,164	○ 5.3 건물경계 경계대책으로 하변이 발주되어 공기 부족.
"	"	"	"	"	인동 삼삼루역 앞 하수도공사	20,000	18,314	5,565	12,749	12,749	○ 도급자 공사 지연.
"	"	"	"	"	4평2층 하수도 설치	200,000	160,315	47,505	112,810	112,810	○ 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되어 공기 부족
"	"	"	"	"	제2 펌프장 유입펌프 추가 설치	37,000	35,200	0	35,200	35,200	○ 2회 추경시 예산확보되어 1회 설계 작업후 발주로 공기 부족.
"	"	"	"	"	2.3단지 유입 스크린 설치	141,000	136,947	5,253	131,689	131,689	○ 2회 추경시 예산확보로 공기 부족
	합			계		6,339,000	5,557,125	2,596,337	2,960,788	2,960,788	

공립 유치원

특별 회계

사 고 이 월 사 업 비 조 서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㉔	지출액 ㉕	지출잔액 (㉔ - ㉕)	차 년 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판	항	세항	세세항	목							
사업비	사업비	공립유치 원사업	주요사업비	토 지 매 입 비	계 3층안 조성사업	347.353	295.121	286.624	8.497	8.497	보상을 수령 지연
	합			계		347.353	295.121	286.624	8.497	8.497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 고 이 월 사업비조서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자출원인 행위액 ㉔	지 출 액 ㉕	지출잔액 ㉔ - ㉕	차 변 도 이월액	이 월 사 기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사업비	사업비	토지구획 정리사업	주요사업	시설비	경유지구 권역조각포장	800.000	672.582	155.727	471.255	471.255	· 고목지라도 연계 사업으로 고목도로 개통후 상황에 따른 허가부족.
"	"	"	"	응역비	봉곡 토지구획 정리사업 원시 선제및 환경영향 평가 응역	579.000	501.000	102.200	400.800	400.800	· 기본 계획 승인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허가부족.
"	"	"	"	배상금	경유지구 관지점산	600.000	596.205	444.766	154.519	154.519	· 침상금 수납 지연
"	"	"	"	"	경유지구 비불면 보상	900.000	843.547	789.653	654.494	654.494	· 보상을 수령 거부및 소유권 미정리 수령 지연
						2,879.000	2,563.444	896.746	1,681.668	1,681.668	

치수사업
특별회계

사 고 이 월 사업비조서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원인 행위액 ㉔	지 출 액 ㉕	지출잔액 ㉔ - ㉕	차 년 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사업비	사업비	치수사업	주요사업비	시설비	구미천 좌우안 선거제 개수3차공사	480.600	441.456	193.157	248.299	248.299	0 지장건물 보상 협의 지연
	합			계		480.600	441.456	193.157	248.299	248.299	

계 속 비 이 월 사 업 조 서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㉔	지 출 액 ㉕	지출잔액 ㉔ - ㉕	차 년 도 이 결 액	이 결 사 유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사업비	사업비	보수구획 관리사업	주요사업	시설비	형곡 도서관 건립	320.000	316.719	279.719	37.000	37.000	• 설계 심사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공가부족.
"	"	"	"	"	광평천 복개공사	3.000.000	2.911.735	1.340.036	1.571.700	1.571.700	• 설계 심사 / 착공으로 인하여 그외 심사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모로 공가부족.
	합			계		3,320.000	3,228.455	1,619.755	1,608.700	1,608.700	

`92地方債(借入金)發行計劃

(單位：百萬圓)

會計別	事業名	發行額 (借入金)	利率 (%)	資金種類	償還條件	償還財源
一般會計	眞平地區住居 環境改善	350	6	財特資金	5年据置10年 均分償還	

※내무부 장관 승인 (예산 10200 -41577호, `91. 12. 17)

제 1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1992 년도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5. 28 - 6. 1 (5일간)				
의 결 일 시	1992. 6. 1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 정수물품 승인 내역 1부. 끝 * 의장은 기권으로 처리하였음 1 9 9 2 년 6 월 1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6 명	반 대		기 권 5 명

정 수 물 품 승 인 내 역

신 규

구 분 품목별	부 서 별	부 서 별			금 액 千원	취 득 사 유	승 인	
		정수	실수	부족			여	부
차량이동무전기	녹 지 과	2		2	2,000	별첨 (제안설명)		
워크 스테이션 (컴 퓨 터)	사 회 과	1		1	900	"		
모 델	"	1		1	200			
프 린 터 기	"	1		1	600			
전 자 복 사 기	문화공보담당 관실	2	1	1	3,000	"		
염 소 투 입 기	위생 처리장	1		1	700	별 첨		
용존산소측정기	"	2	1	1	1,450	"		
원 심 분 리 기	"	3	2	1	85,000	"		

제 1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5. 28 - 6. 1 (5일간)					
의 결 일 시	1992. 6. 1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 의장은 기권으로 처리리하였음 <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호중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 을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 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32조 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물관련시설

7. 창고시설 (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제32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8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8. 관광 휴게시설 (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 법령에 의한 당해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8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 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